2020년 R&D조세지원 주요 개정사항

관련 법령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정 1 기업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서식 신설

- 연구과제 총괄표 :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 연구노트(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만): 연구과제 총괄표에 기입한 연구과제별로 5년간 작성·보관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연구노트는 법령상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 가능합니다.

※ 양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서식 참조

개정 2 신성장·원천기술분야 적용범위 확대

-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기술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기술 범위확대 (현행) 11개분야 173개 기술 → (개정)12개분야 223개* 기술
 - * 산기협 건의 3개 기술(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기술, 인휠모터기술, 무인충전로봇) 추가
 - ※ 대상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참조
- 이월공제 기간 확대 : (현행) 5년 → (개정)10년

개정 3 위탁·공동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현행) 과학기술 분야 위탁·공동 R&D비용만 가능 (개정) '과학기술 분야'와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R&D' 위탁·공동 R&D비용

적용시기: `20.1.1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업신청 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우편, 전자(홈택스), 직접방문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제출서류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33~9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개정 1 일몰 연장(~`22년 12월 31일)

- 개정 2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기업연구소 감면율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감면율에 10% 추가감면 혜택 적용
 - 대·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 각각 35% → 각각 45%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취득세 70%, 재산세 60%

R&D세액공제 배제시점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개요

기업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사유에 따른 R&D비용 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

내용

(현재) 인정취소일부터 R&D세액공제 배제 (개정) 인정취소 사유에 따라 R&D세액공제 배제시점 차등적용

배제사유	배제시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	인정취소일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주요 준수사항]

-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
-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한 경우, 각 소재지에는 연구 시설을 갖추고 1명 이상의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 ★ 매년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실적(연구개발활동조사)을 제출할 것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의 큰길로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 (1979.2월) 민간연구소협의회로 발족, (1982.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확대개편, (1991.2월~) 現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등 **위탁 운영**
 -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 현재는 19개의 업종(광고, 출판 등)만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 □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 (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 *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함
 - ※ 분리구역 인정요건은 '19.12.26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 중
 -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 확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 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 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 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현황('15 ~ '19)

단위: 개소,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연구소	35,288	37,631	39,313	40,399	40,750
	연구원	312,466	320,201	329,938	335,882	337,420
세스분야	연구소	7,854	8,331	8,697	9,057	9,202
	연구원	50,573	52,112	53,255	54,664	55,189

※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기계, 화학 등) 연구소 및 연구원 수에 비해 낮은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붙임]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1

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내용

[1]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가능 업종 확대

- o 현재 문화서비스 등 **19개로 지정된 서비스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 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2] 중견기업 매출액 확인요건 완화

- ㅇ 평균 매출액과 상관없이 중견기업에 대한 인적요건을 7명으로 일원화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모두 연구전담요원 7명 기준 적용. 다만, 연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10명) 적용 중

현	행	개 선 안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나 업종 위생서비스(산업)	범위(제2조제5호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3701 ~ 390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외업종(제16조의2제4항 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매 운수 및 창고(산업) 출판	4711, 4731, 4781, 4791 4930 ~ 4940, 5210, 5294 5811 ~ 5819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5821 ~ 5822, 6201 ~ 6209 5911 ~ 5912, 5920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방송(산업) 부가통신	6010 ~ 6022 6121 ~ 6129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정보서비스	6311 ~ 6399	기타 주점업	56219	
금융 및 보험(산업) 광고	6412 ~ 6530, 6612 ~ 6620 7131 ~ 713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91291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7211 7212 ~ 7292 7310 ~ 7410, 7430, 7521 ~ 759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교육기관(산업) 의료 및 보건(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문화서비스(기타)	8550, 8561 ~ 8569, 8570 8610 ~ 8690 9011 ~ 9019 9021 ~ 9029			

③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 명확화

○ 2개의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각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될 수 있게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도 가능) 상시 근무토록 규정 정비

2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①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현실화

- '연구분야 관련성'에 대한 부가 조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자격요건 단순화
 - ※ 기술 융복합 등으로 기업 연구분야 관련성 판단의 한계 상황 반영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 신청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③ 중소기업 증명서류 제출 근거 마련

- o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관한 조문 신설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가능

④ 해당기업 직원 증명서류 제출 근거 마련

- 연구전담요원의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 서류*에 관한 조문 신설
 -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 소득원천징수부

5 변경 신고기간 확대 등

- 변경 신고기간은 14일 → 30일로 연장하고 변경신고 사항에서
 연구기자재 품명 및 모델명 항목*은 삭제
 - * 연구기자재와 같이 수시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법령에 따라 매번 신고하는데 한계 존재